■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하크코리아 유한회사
판매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2층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2)
판매업 대표전화		02-3484-5700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Mercury diiodide
	고유번호 또는 식별번호 (CAS No.)	7774-29-0
	용도	수질 분석용 시약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취급시 긴급 상황에서는 자체 포함된 호흡 보호 장치를 사용할 것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 취급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눈이나 몸을 씻을 수 있는 세안시설과 샤워시설을 설치할 것 - 취급시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화학사고 예방	- 화재시 수은 산화물, 수소 요오드화물을 배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강한 산화제에 반응하므로 주의할 것 - 접촉시 피부 부식 또는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수생생물에게 장기적인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보관・저장	- 밀폐된 용기속에서 서늘하고 건조하게 보관할 것 - 산화물질과 따로 보관할 것 - 빛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할 것 - 자물쇠를 채우고 기술 전문가 또는 관련 보조원들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관할 것
	운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함.
	기타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 물질안전원,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